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당(지구당) 설치근거 마련 등〉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29호)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45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9호)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09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7
1. 개정안의 주요내용	7
2. 개정안의 검토	8
(1) 후원회 지정권자 및 후원금 지정기부	8
(2)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한도(안 제11조·제12조) ..	12
(3) 경상보조금의 지구당 의무배분	14

I. 제안경위

1. 김영배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34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윤상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3. 남인순의원안

가. 발 의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4. 장경태의원안

가.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영배의원안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윤상현의원안

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법에도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 라.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
(안 제28조제2항).

바.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사.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
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3. 남인순의원안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장경태의원안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역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역당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고, 후원금 지정기부 또는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의무배분을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김영배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장경태의원안
후원회 지정권자 (제6조)	현행(중앙당) + 지역당			
후원금 지정기부 (제10조)	후원인이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시 지역당 지정 기부가능	규정 없음		후원인이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시 지역당 지정 기부가능
후원인 기부한도 (제11조)	규정 없음	500만원	200만원	
후원회 모금한도 (제12조)	5천만원	1억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경상보조금 지역당 의무배분 (제28조)	규정 없음	10% 이상		규정 없음

2. 개정안의 검토

(1) 후원회 지정권자(안 제6조) 및 후원금 지정기부(안 제10조)

현행법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두 현행 중앙당에 더해 지역당을 추가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후원회 지정권자 (제6조)	중앙당	중앙당 + 지역당

이는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당을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역당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은 정당의 법정조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중 시·도당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¹⁾ 지역당을 후원회 지

1)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

정권자로 추가하는 경우 시·도당의 후원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 정치후원금의 역사는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당(중앙당)에만 정치후원금을 허용하였다가 점점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가 확대되어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모두 후원회를 허용하였음. 지구당 폐지 후에는 일시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만 후원회를 허용(부칙으로 2년 후 폐지 규정)하였고, 2006년에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도 폐지됨.

그러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결정²⁾을 내림에 따라 2017년 중앙당후원회만 부활하여 현재까지 중앙당만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면서 해당 조항이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2017년 6월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정당 후원회 지정권자 연혁》

구 분	정당 후원회 지정권자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후원회제도 최초 도입	중앙당
1989년 ~ 2004년 지구당 폐지 전	중앙당 + 시·도지부 + 지구당
2004년 지구당 폐지(2004.3.12.) 후	중앙당 + 시·도당 ※ 부칙으로 정당 후원회(중앙당+시도당)를 이 법 시행 후 2년 후에 폐지하도록 규정
2006년	정당 후원회 제도 폐지(2006.3.13.) ※ 정치자금법 전부개정(2005.8.4.)시 부칙으로 정당 후원회 2006년 3월 13일 폐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2015.12.23.)	헌법불합치결정
2017년 정치자금법 개정(2017.6.30.) 이후 ~	중앙당

※ 자료: 임채진, 정당 후원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116호(2016.1.22.) 내용 추가 및 자료 편집

한편, 김영배·장경태의원안의 경우에는 후원회 지정권자 외에도 중앙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도 추가로 도입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김영배·장경태의원안
후원금 지정기부 (제10조)	<신 설>	<u>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u> <u>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u> <u>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가능</u>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하여 사용)

이는 지역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후원인이 중앙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 후원금의 사용 대상을 중앙당 또는 지역당으로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³⁾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의견⁴⁾을 제안하면서 지역당(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되, 지역당의 후원회를 허용하진 않으면서⁵⁾ 후원인이 중앙당 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결국, 후원회 지정권자로서 지역당을 추가하는 것과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의 도입 여부는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성과 후

3) 후원금 지정기부 제도는 지역당 후원회 허용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복해서 도입 가능

4)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0016, 2016.8.25.제안),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5) 제21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역당 부활 논의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역당을 추가할 경우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및 유급사무직원 급여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후원회 설치보다는 후원금 지정 기부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원회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 유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한도(안 제11조·제12조)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역당을 추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⁶⁾를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김영배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장경태의원안
후원인 기부한도 (제11조)	규정없음	500만원	200만원	
후원회 모금한도 (제12조)	5천만원	1억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현행법상 중앙당의 경우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500만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후원회 지정권자의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다음과 같음.

6) 중앙당 등 일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를 모금할 수 있음(법 제13조).

《현행법상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한도》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인 기부한도(\$11)		후원회 모금한도(\$12)
§6.1호	중앙당	500만원		50억원
§6.2호	국회의원			1억 5천만원
§6.2의2호	지방의원	시도의회	200만원	5천만원
		구시군의회	100만원	3천만원
§6.2의3호	대통령 후보자	1천만원		선거비용제한액 5%
§6.3호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6.4호	국회의원 후보자	500만원		1억 5천만원
§6.5호	당대표경선 후보자			
§6.6호	지방의원 후보자	시도의회	200만원	5천만원
		구시군의회	100만원	3천만원
§6.7호	지자체장 후보자	500만원		선거비용제한액 50%

결국, 적정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는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성과 고액 기부인의 영향력 행사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기 전에는 지구당에 대한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2천만원(법인은 5천만원), 지구

당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3억원(선거시 6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정당 후원회 후원인 기부한도 및 후원회 모금한도 연혁》

구 분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인 기부한도		후원회 모금한도 (선거시 2배 모금가능)
		개인	법인	
2004년 지구당 폐지 전 (1997~2004)	중앙당	1억원	2억원	300억원
	시·도지부			30억원
	지구당	2천만원	5천만원	3억원
2004년 법 개정 (2004.3.12.)	중앙당	1천만원		50억원
	시도당	500만원		5억원
2006년 (2006.3.13.)	정당 후원회 폐지			
2017년 중앙당 후원회 부활(현행)	중앙당	500만원		50억원

(3) 경상보조금의 지구당 의무배분(안 제28조)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⁷⁾에는 ① 경상보조금(법 제25조), ② 선거보조금(법 제25조), ③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법 제26조), ④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법 제26조의2) 및 ⑤ 공직후보

7)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헌법적 근거 아래 1980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어 현행 「정치자금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자 청년추천보조금(법 제26조의3)이 있는데,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액을 분기별로⁸⁾ 균등 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정당 보조금 종류》

구 분	의 미	대상 선거
경상보조금 (제25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선거와 무관히 매년 지급
선거보조금 (제25조)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	당해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 지역구 시도 및 구시군의원선거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2)	당해 지역구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제26조의3)	당해 지역구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경우 그 일부를 특정 목적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30% 이상,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경상보조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9)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

시·도당에 10% 이상,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대상 및 비율》

대 상	비 율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청년정치발전	5% 이상
계	55% 이상

윤상현·남인순의원안은 정당의 법정조직으로 지역당을 추가하면서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김영배·장경태의원안	윤상현·남인순의원안
경상보조금 지역당 의무배분 (제28조)	규정없음	10% 이상

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意識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 ③·④ (생 략)

이는 경상보조금의 고정적 배분을 통해 지역당의 재원마련을 후원금과 같은 외부환경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경상보조금의 의무배분 대상 및 비율을 늘리는 것은(현행 4곳 55% 이상→지역당 추가시 5곳 65% 이상) 경상보조금 지출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이 일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상보조금의 의무배분은 1997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정책개발비에 2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최초이고, 2004년 동법 개정으로 경상보조금의 100%를 모두 용도별로 지정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제한하였다가, 2005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책연구소에 30% 이상, 시도당에 10% 이상,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2022년 동법 개정으로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 사용하도록 추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연혁》

구 분	의무배분 대상	의무배분 비율
1997년 법 개정 (1997.11.14.) ※ 보조금 의무배분 최초도입	정책개발비	20% 이상
2004년 법 개정 (2004.3.12.)	중앙당	50%
	정책연구소	30%
	시도당	10%
	여성정치발전	10%
2005년 법 개정 (2005.8.4.)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2022년 법 개정 ~ 현행 (2022.2.22.)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청년정치발전	5% 이상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개정의견¹⁰⁾을 제안하면서 시·도당을 임의기구로 하고, 현재 시·도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10% 이상)을 시·도당 대신 지역당(구·시·도군)에 배분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32

¹⁰⁾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067, 2021.5.28. 제안)

[2015. 2. 2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1. 구·시·군당 설치 허용**

-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임의기구로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은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구·시·군당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도 중앙당과 시·도당과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 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016. 8. 2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전제]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가. 구·시·군당 설치를 통한 생활정치 활성화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적 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구·시·군당 운영의 민주성 확보

-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

다.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시·군당 운영 방안

-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이 중앙당,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 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에 그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 공개 하도록 함.

[2021. 5. 2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전제]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 허용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산하여 자치구·시·군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구·시·군당을 가지도록 함.

* 2020년 12월 현재 자치구·시·군 총수는 226개임.

나.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방지

-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구·시·군당의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년(재·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

다.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 중앙당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이 중앙당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참고2

개정안 조문대비표

<김영배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 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당비) ① ----- -----있으며, 지역당은 소 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 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 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 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 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생략)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 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당을 지정 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 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이 지 정한 지역당에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 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3.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

-----.

-----.

1. -----

-----중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

2. -----

-----중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

3. -----

-----중앙당

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략)

② ~ ⑦ (생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후원회·지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

-----.

1. -----중앙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 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 (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 선거에 참여한 연도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

③ -----시·도당 및 지역당-----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

1. -----

가. -----

-----시·도당 및 지역당-----

나. -----

-----시 · 도당 및 지역당

다. _____

_____시 · 도당, 지
역당 및 정당선거사무소_____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윤상현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 ----- ----- ----- -----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당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당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 바. (생략)

<신설>

3.·4. (생략)

③ ~ ⑥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3.·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
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illegible]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당준비
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1억5천만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
한 특례)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지역구국회의원후
위회·지역당후위회 _____

②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지방의회의원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
자후원회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
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
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
는 그 존속결의가 있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
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
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
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 ④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
는 당원인 경우

2. (생략)

② 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
한다)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
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

② -----중앙당
후원회·지역당후원회·국회의원후
보자후원회-----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

-----.

1. -----중앙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
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
함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중앙당 및 지
역당은 제외한다-----

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 ④ (생략)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또는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으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10 이상은 시
· 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
당에-----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u>시·도당</u>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당(후원회를 둔 <u>중앙당</u>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 ----- ----- ----- ----- ----- -----. 1. -----<u>중앙당</u>창당준비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생략)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u> <u>및 시·도당이</u>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u>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u>정당의 회계책임자</u>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u>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u>)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	1. 2. (현행과 같음)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u>----- ----- ----- ③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 ----- ----- -----. 1. ----- 가. ----- ----- -----<u>시·도당 및 지역당</u>----- 나. ----- ----- ----- ----- -----
---	---

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지역당</u>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남인순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지역당</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3.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u>다. 지역당후원회</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 설>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
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
한 특례) ① -----

1. -----

-----중앙당후
원회·지역당후원회-----

2. -----

-----중앙당-----
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3. _____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앙당 후원회</u>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 원후원회	----- <u>중앙당 후원회 · 지역당후원회</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 ----- ----- ----- ----- -----.
1. 후원회지정권자가 <u>중앙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u> 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1. ----- <u>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u> 를 포함한다) · <u>지역당</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u>시·도당에</u>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 <u>시·도당</u> <u>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u>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u>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u> ③ <u>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u>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역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u>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u>----- ----- ----- ③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 에 의하고, 당해 <u>시·도당과</u> <u>정당선거사무소</u>는 나목에 의 한다. 2. ~ 5. (생 략) ② ~ ⑥ (생 략)	----- ----- -----<u>시·도당, 지</u> <u>역당 및 정당선거사무소</u>-----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장경태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 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당비) ① ----- -----있으며,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생략)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	② ----- ----- ----- -----

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 00만원 가. 나.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 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 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 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 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 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 략) <u><신 설></u>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나. (현행과 같음) <u>다. 지역당후원회</u>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당후원회는 1억원</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
---	---

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

한 특례) ① -----

-----.

-----.

1. -----

-----중앙당

후원회·지역당후원회-----

2. -----

-----중앙당

후원회·지역당후원회-----

3. -----

-----중앙당

후원회·지역당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 ① -----

-----.

1. -----중앙당(중

<u>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또 는 당원인 경우 2. (생략) ② ~ ⑦ (생략)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u> 및 <u>시·도당</u>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u>시·도당</u>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	<u>양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u> <u>지역당</u>-----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u>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u> <u>시·도당 및 지역당</u>----- ③ -----<u>시·도당 및 지역당</u>-----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가.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